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('26년 5월)

-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은 다른가요? -

2026. 6. 26.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본 이미지는 생성형 AI(ChatGPT)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.

□ 5월 주요 상담사례

ㅇ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은 다른가요?

- 저작물에 대한 계약은 크게 저작권법 제45조에서 정한 '저작재산권의 양도' 계약과 동법 제46조에서 정한 '저작물의 이용허락'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.
- ① '저작재산권의 양도' 계약이란 저작재산권자(양도인)가 가진 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.
- ② '저작물의 이용허락' 계약이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(이용자)에게 저작물의 복제, 배포, 공중송신 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.
- '저작재산권의 양도'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양수인이 저작재산권자가 된다. 따라서 양도인은 자신의 저작물이더라도 양수인의 허락이 없는 경우,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.
- 반면 '저작물의 이용허락' 계약은 '저작재산권의 양도' 계약과는 달리, 권리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. 이에 여전히 저작재산권자에게 권리가 있으며,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만을 갖는다.
- 추가적으로,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4종 표준계약서(저작재산권 전부·일부 양도계약서 및 저작물의 독점·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)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는바, 저작권 계약 체결 시 참고가 된다.
- [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>자료공간>법령자료>표준계약서>[저작권]저작권 표준계약서(4종) 제정]

저작권법 제45조(저작재산권의 양도)
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.
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.

제46조(저작물의 이용허락)
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.

□ 저작권 용어 풀이

ㅇ 저작재산권과 저작물의 이용허락

- '저작물'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
- '저작재산권'이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, 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,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.
- '저작재산권의 양도' 계약이란 저작재산권자(양도인)가 가진 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,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.
- '저작물의 이용허락' 계약이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(이용자)에게 저작물의 복제, 배포, 공중송신 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.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가 허락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조건(이용 방법·기간·횟수·장소·매체·대가 등)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* '챗봇'을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챗봇: https://chatbot.gov.kt-aicc.com/client/GCL-01-C-00000221-0001/chat.html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'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('26년 5월)' 저작물은 '공공누리'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)의 '고양시, 고양일산체 R' 글꼴로 작성